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대상
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자로 판정(요양 1,2,3,4,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2. 계약기간

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된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,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 | 는 이용계약서(표준약관)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.

3. 계약목적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.

4. 계약 당사자의 의무

4-1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,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

4-2. 신원 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
인적 사항 등 변경 시, 즉시 통보할 의무
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,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, 입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4-3. 신원 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 권리
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알 권리 및 간호 및 재활치료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
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
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

5. 계약의 해제

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계약만료(또는 계약 해지)일로부터 7일 이전에 통보해야 한다.

시설은 이용자수칙이나 계약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계약 해지의 내용은 운영 규정이 정한 바를 따른다.

시설이 급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 해지 처리한다.

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과 보호자 간 협의 후, 계약을 해지한다.

6.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 부담

수급자의 이용료 및 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따른다.

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,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○ 본인부담금

구 분		금액(원/%)	내역
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	공단지원금	총액의 85%	수급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% 중 85%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	개인부담금	총액의 15%	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기초 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, 경감대상자는 40% 또는 60% 경감 될 수 있음
비급여 항목	식사재료비	3,200원	3,200원 * 2식 = 6,400원
	간식	-	-